

# 부실공사관련 벌칙요약

최근 대형건설사고가 잇따라 발생,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여 사회적 물의가 됨에 따라 정부는 '94년을 「부실공사 없는 해」로 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연장, 하도급 제도의 개선, 감리제도의 강화 등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하여 벌칙을 대폭 강화 등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하여 벌칙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실공사에 따른 벌칙규정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부와 대한건설협회가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고자 「부실공사 관련법칙」을 쉽게 요약·정리해 책으로 발간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부실공사에 대하여만 처벌이 가해졌으나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경미한 부실에 대하여도 관련업체 및 기술자 명단을 전산입력하여 그 빈도와 정도를 합산함으로써 불이익과 자동연결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실공사 관련업체 및 기술자는 그 명단을 공표하여 부실공사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아책 머리말에서 밝혔다.

본고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중 본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게재된 내용이다.

## 적용법 및 벌칙

### [1] 적용법

구 분	부실시공	부실설계	부실감리	안전조치미강구
· 건설업법	○			○
· 건설기술관리법	○		○*	
· 건설법	○	○	○	○
· 건축사법		○	○	
· 주택건설촉진법	○	○	○	○
· 예산회계법	○*	○*	○*	○*
· 국가기술자격법	○	○	○	○
· 산업안전보건법				○

\* 표시는 공공공사에만 적용

### [2] 벌칙의 종류

- ① 행정벌 : 징역, 벌금, 과태료
  - ② 행정제재 : 면허취소, 영업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 ※ 행정벌과 행정제재는 동시 처벌 가능

[2]처벌절차

- ①징역과 벌금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되고 과태료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함
- ②면허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는 건설부장관 또는 수입관청이 청문 등의 절차를 밟아 처분함

· 조잡시공의 경우	건설업자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1년 이내)	건설업법 제52조
·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자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2천만원이하)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주택건설등록업자	영업정지(5월이내) 또는 과징금(5천만원 이하)	
	건설업자		건설업법 제59조

벌칙내용(요약)

[1]부실시공의 경우

위 반 행 위	처분대상	벌 칩	근 거
· 조잡시공등으로 하자 책임기간내에 중대한 하자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	징역(5년이하) 또는 벌금(5천만원 이하)	건설업법 제59조
	시 공 자 사업주체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 2
· 건설기준 위반 및 구조상 안전미확보	사 업 시 행 자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2천만원 이하)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시 공 자 건축구조 기술사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	건축법 제38조, 제79조
	시 공 자		건축법 제55조, 제79조
· 조잡시공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경우	건설업자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2천만원 이하)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건 축 주 시 공 자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	건축법 제79조
	시 공 자 사업주체	징역(1년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53조
	건설업자	영업정지(6개월 이내)와 과징금(5천만원 이하)	건설업법 제50조
· 시공상 하자로 입주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	등락말소 또는 영업정지(1년이내)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2]부실설계의 경우

위 반 행 위	처분대상	벌 칩	근 거
· 조잡시공등으로 하자 책임기간내에 중대한 하자 발생한 경우	설 계 자	징역(5년이하) 또는 벌금(5천만원이하)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 2
· 건설기준 위반 및 구조상 안전미확보	설 계 자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이하)	건축법 제38조, 제55조, 제79조
· 건축물의 부실설계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건 축 사 사무 소	등락취소	건축사법 제28조

※현행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는 부실설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부실설계에 대하여도 처벌을 받도록 법개정 예정임.

[3]안전조치 미강구의 경우

위 반 행 위	처분대상	벌 칩	근 거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상·보건상 조치위반	사 업 주	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2천만원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4조
	사 업 시 행 자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2천만원이하)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발생시 작업중지 조치위반	사 업 주	징역(1년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6조
· 중대재해 발생시	건설업자	영업정지(6개월이하) 또는 과징금(5천만원 이하)	건설업법 제50조
· 공사현장에서의 위해 방지조치 미이행	건 축 주 시 공 자	벌금(200만원이하)	건축법제24조, 제31조, 제80조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건설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그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부실공사 관련 법조문 발췌

※ 발췌조문중에 생략된 항 및 호는 부실공사와 관련없는 항 또는 호임.

### [1] 건설업법

제49조(시정명령 등)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의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식을 내걸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 완공 후 표식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5.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제50조(영업정지 등)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제51조(과징금 처분) ①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건설부장관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2조(건설업의 면허취소등) ①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제50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7.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② 건설부장관은 각 협회가 회원인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의 면허취소를 건의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건설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건설업자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작하게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65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의 금지를 위반한 자 및 다른 건설사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를 고용함으로써 당해 건설기술자가 동조에 위반하게 한 건설업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건설업법 시행령**

**제49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등)** ① 법 제50조 내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및 과징금의 총액이 법 제

50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업무정지기간중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 ②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책임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건설부장관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감리전문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벌칙)** 감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부실공사관련 벌칙요약

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게한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등

2.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 또는 수입·판매한 자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의 품질시험 결과의 제출 또는 품질시험의 실시에 관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를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2조2(벌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제42조의 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5조(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

으로 본다.

### [4]예산회계법

**제9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그 자격제한기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 [5]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당해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8. 계약의 체계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9.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0.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11.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 게위해를 가한 자

12.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②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무부장관과 다른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6]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 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격제한 기간을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 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호의 사유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부정당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부정당업자의 통보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령 제130조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를 경쟁입찰에 참가시키지 못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령 제1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통보는 별지 제17조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에 의한다.

## [7]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기술자격의 최소등) ① 주무부장관은 부정행 방법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 부실공사관련 벌칙요약

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8]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개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당해 기술자격수첩을 회수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날의 전날까지
2. 갱신등록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다시 갱신등록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

### [9]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과 대상종목은 <별표7>과 같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별표 7>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제24조의2 관련)

1. 자격취소	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기술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
---------	---------------------------------------------------------------------------------

기 준	해를 끼치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자격수첩을 2회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라. 자격수첩 대여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바. 자격정지 처분기간 종료후 3년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 기술자격취득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아. 기술자격취득자가 영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자격을 중복하여 취득한 경우 자. 가.목 내지 아.목과 유사한 행위 또는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 준	2. 자격정지 3년 가. 기술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나. 자격수첩을 1회 6월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다. 1회 6월이상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 라.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행위 또는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3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격정지 2년 가. 기술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나. 자격수첩을 1회 3월이상 6월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다. 1회 3월이상 6월미만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 라.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행위 또는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2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 본	4. 자격정지 1년 가. 자격수첩을 1회 3월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나. 1회 3월미만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행위 또는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1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기취득한 자격종목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정지

## 부실공사관련 벌칙요약

대 상 종 목	<p>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이 속하는 직종이 진종목</p> <p>2. 기취득한 자격종목과 관련없이 시험부정 또는 타인의 부정방조등 법 제11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p> <p>가. 1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때 : 당해 자격종목</p> <p>나. 2종목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최상위 등급의 자격종목으로 하고 동일등급이 수개월 경우에는 최근에 취득한 1개의 자격종목</p>
비 고	<p>자격수첩의 대여 또는 이중취업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여 또는 이중취업과 관련된 자격이 20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각 자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여 또는 이중취업의 순서에 따라 그 회수를 산정하여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이상의 자격수첩이 동시에 대여된 경우에는 대여기간이 장기인 자격수첩의 대여를 나중의 대여로 보되, 대여기간도 동일한 경우에는 최근에 취득한 자격수첩의 대여를 나중의 대여로 본다.</p>

### 10]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 분진·산소결핍공

- 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굉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작업중지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26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제5항, 제35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사용하는 자

3. 제34조제4항 또는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